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2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06월 29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에 부합하도록 하고, 안 제38조의2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).
-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함(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.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
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
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

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8조의2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.

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, 민간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
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제출안	수정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의 구성·운영</p> <p>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의 구성·운영</p> <p>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.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서 한다.</p> <p>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1.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2.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했던 자</p> <p>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

<p>임명한다.</p> <p>2. <u>지역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재정복지지원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③ <u>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④ <u>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</u></p> <p>⑥ <u>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④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⑤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⑥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⑦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⑧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⑨ (제출안과 같음)</p>
---	--	---
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8조의2(수탁기관선정위원회)</p> <p>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<sup>으로</sup> 한다.</p> <p>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</p>	<p>제38조의2(수탁기관선정위원회)</p> <p>①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>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, 민간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<sup>으로</sup> 한다.</p> <p>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제출안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	--	---

	<p>를 대행한다.</p> <p>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⑥ (제출안과 같음)</p> <p>⑦ (제출안과 같음)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” 을 “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 로 하고, “취득 및 처분 등” 을 “관리 및 처분” 으로 한다.  
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장
2. 교육지원청·직속기관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감

③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·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한다.

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.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
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.)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

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공유재산심의회” 를 “심의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“공유재산심의회” 를 “심의회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 내용 중 “제2항” 을 “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 을 “영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불법무단 사용 여부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동” 을 “그” 로 한다.

제18조제2항 본문 중 “수의계약”을 “수의의 방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누구든지 법·영 및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20조 제목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·수익허가 사용료”로 하고,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1.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4시간 까지 : 사용료의 50퍼센트

나.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: 사용료의 100퍼센트

2.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.

② 제1항 단서 규정의 기관이외의 기관은 일시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일시 사용허가”를 삭제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제26조제8항은 제외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

2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

제2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20조를 준용한다.

제2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
  - 가. 1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
  - 나. 2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
  - 다. 3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8분의 1
  - 라. 4층 이상의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10분의 1

제27조제4항 본문 중 “%” 를 “퍼센트” 로 한다.

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 중 “%” 를 “퍼센트” 로 한다.

제30조 제목 중 “에 관한 특례” 를 “의 조정” 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 - 가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  - 나. 2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
  - 가. 50만원 이하: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  - 나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  - 다. 1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
제31조의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중 “%” 를 “퍼센트” 로 한다.

제35조 본문 앞에 “영 제45조제1항에 따라” 를 삽입하고, “잔액의 연 3%” 를 “잔액에 연 3퍼센트” 로 한다.

제36조제4호 중 “%” 를 “퍼센트” 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.

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, 민간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

가 되어야 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

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이상”을 “초과”로 한다.

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상금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46조 본문 중 “감정평가법인에”를 “감정평가업자에게”로 한다.

제4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영 제11조의3제1항·제2항, 제14조제6항, 제32조제3항, 제39조제2항, 제45조제2항,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48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재산 일시 사용·수익허가 사용료 및 옥상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

례 시행 후 접수된 일시 사용·수익허가 신청 및 건물대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폐지 및 위원의 임기 만료)

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7월 2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20일자로 만료된다.

제5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<u>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장에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<u>교육감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“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장</u></li> <li>2. <u>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감</u></li> </ol> <p>③ 「<u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</u>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 · 수익허가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「<u>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“이라 한다)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“라 한다)를 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</p>	<p>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“라 한다.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li> <li>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</li> </ol> <p>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</li> <li>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</li> </ol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</p>



현행	개정안
<p>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 행정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2. 지역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재정복지지원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</p> <p>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</p> <p>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)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공유재산심의회</u>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6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① 재산관리관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</p>	<p><u>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⑧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제6항에 따른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심의회)의 기능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<u>심의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u>제3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① ----</p> <p>-----<u>영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실태조사) ① (생략)</p> <p>② 1. ~ 6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불법무단 사용 여부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</b></p>	<p><b>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</b></p>
<p>제14조(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<u>동</u>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.</p>	<p>제14조(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그</u>----- -----</p>
<p><b>제3장 행정재산</b></p>	<p><b>제3장 행정재산</b></p>
<p>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(생략)</p> <p>②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<u>수익계약</u>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8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수익의</u> <u>방법</u>----- ③ 누구든지 법·영 및 이 조례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행정재산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)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나 사용목적·성질 등으로 보아 일수 또는 횟수별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별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</p>	<p>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제20조(행정재산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 사용료)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4시간 까지 : 사용료의 50퍼센트</li> <li>나.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: 사용료의 100퍼센트</li> </ul> </li> <li>2.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.</li> </ol> <p>② 제1항 단서 규정의 기관이외의 기관은 일시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</p>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	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--

현행	개정안
<p>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일반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제4항 및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----- ----- 제6항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.</p>	<p>제22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---- -----사용료 요율, 전세금의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. 다만, 제26조제8항은 제외한다.</p>
제4장 일반재산	제4장 일반재산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대부</p> <p>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<u>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“이라 한다)</u>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</p> 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⑦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~ ②·③ 1. ~ 5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대부</p> <p>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<u>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<u>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</u></li> <li>2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<u>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</u></li> </ol> 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20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~ ②·③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지상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</u> 가. <u>1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</u> 나. <u>2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</u> 다. <u>3층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8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비율 30%를 적용한다.</p> $\text{토지하는 총면적} = \frac{\text{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}}{\text{대부분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}} \times \frac{\text{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}}{\text{대부분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}}$ <p>⑤ (생략)</p> <p>제28조(대부료의 감면)</p> <p>1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라.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·부자재 조달비율이 100%인 외국인 투자 사업</p> <p>    마.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%를 수출하는 사업</p> <p>    바. ~ 사. (생략)</p>	<p><u>분의 1</u></p> <p><u>라. 4층 이상의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10분의 1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퍼센트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대부료의 감면)</p> <p>1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라. ----- <u>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    마. ----- ----- <u>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    바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%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가. ~ 나. (생 략)</p> <p>다.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·부자재 조달비율이 75% 이상 100%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</p> <p>라.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% 이상 100%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</p> <p>마. ~ 바. (생 략)</p> <p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% 이상 75%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</p> <p>라.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% 이상 75%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</p> <p>마. ~ 사. (생 략)</p>	<p>2. ----- -----퍼센트-----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퍼센트----- ----- ----- --퍼센트-----퍼센트----- -----</p> <p>라. ----- -----퍼센트-----퍼센트----- -----</p> <p>마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퍼센트-----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퍼센트 ----- ----- -----퍼센트----- ----- 퍼센트----- -----</p> <p>라. ----- -----퍼센트-----퍼센트----- -----</p> <p>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(생 략)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조정)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대부료의 납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100만원 <u>이상</u> 2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2. 2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<u>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50만원 이하: 3개월 이내 2회</p>	<p>제31조(대부료의 납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</u></p> <p>가. 100만원 <u>초과</u> 2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나. 2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2. <u>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</u></p> <p>가. 50만원 이하: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나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다. 1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 <p>3. 100만원 초과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</p>	
<p>제2절 매각</p>	<p>제2절 매각</p>
<p>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</p> <p>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%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%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%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퍼센트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퍼센트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퍼센트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5조(교환차금의 분납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 반재산과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의 연 3%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5조(교환차금의 분납)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에 연 3퍼센트 --- -----</p>
<p>제36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1. ~ 3. (생략) 4. 일단의 토지가 300제곱미터 이하(단,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한다. 5. ~ 6. (생략)</p>	<p>제36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1. ~ 3.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퍼센트 ----- 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절 신탁 및 위탁</p>	<p>제3절 신탁 및 위탁</p>
<p>제38조(일반재산 관리·처분 등의 위탁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제38조(일반재산 관리·처분 등의 위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의2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며, 민간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2.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공무원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</u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.</u></p>	<p>-----<u>감정평가업자 에게</u>-----</p>
<p>제47조(이자) 영 제11조의3제1항· 제2항, 제14조제6항, 제32조제2 항·제3항, 제39조제1항·제2항, 제45조제1항·제2항, 제81조제1 항, 제82조에 따라 이 조례의 각 종 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%로 한 다.</p>	<p>제47조(이자) 영 제11조의3제1항· 제2항, 제14조제6항, 제32조제3 항, 제39조제2항, 제45조제2항,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및 과오 납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 센트로 한다.</p>
<p>제48조(준용)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·공유재산에 관한 규 정(질의회신·지침·편람 등)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49조(시행규칙) (생 략)  부 칙</p>	<p>제49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  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행정재산 일시 사용·수익허 가 사용료 및 옥상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제1항 및 제27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일시 사용·수익허가 신청 및 건물대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폐지 및 위원의 임기 만료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7월 2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</u></p> <p><u>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본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20일자로 만료된다.</u></p> <p><u>제4조(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</u></p>